

제2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6. 6. 9(목) 10:00-11:30
- 장 소 : 교무회의실(삼척과 화상회의로 진행)
- 참석자 : 위원장 등 9명 참석
- 회의내용

- 심의 안건

1. 2016년 1기 산학협력단 결산
 2. 산학협력단 규정 제·개정(안)
-

- 성원보고(사회자)

- 2016년 제2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개최 선언
- 위원 14명 중 9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위원장 인사 말씀

- 바쁜 와중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림
- 지난 월요일 신임 총장님이 부임하시고 곧 산학협력단장이 새로 임명이 될 예정
이므로 이번이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될 것임
- 운영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예산과 연구진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건 소개(위원장)

-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1기 산학협력단 결산과 산학협력단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심의 안건

1. 2016년 1기 산학협력단 결산 심의

- 위원장 : 2016년 1기 산학협력단 결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주요내용을
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2016년 1기 산학협력단 결산

- 재무회계팀장 : 2016년 1기 산학협력단 및 지점(학교기업, 센터) 결산내역을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함.
- 위원장 : 제1호 의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택 위원 : 간접비가 예산과 결산 금액에 차이가 꽤 크게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 재무회계팀장 : 산학협력단 회계기간 변경에 따라 처음으로 2개월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진행하니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였음.
- 위원장 : 삼척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조석수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1기 산학협력단 결산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전체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제1호 의안 2015년도 산학협력단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 산학협력단 규정 제·개정(안) 심의

- 위원장 : 산학협력단 규정 제·개정(안)이 총 5개 안건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건 별로 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의안>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지침 개정(안)

- 기획협약팀장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자료를 설명함.
- 위원장 : 제2호 의안에 대해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문예대의 건의로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3개국 이상 참가보다 국외 공인된 전시장 및 공연장의 초대로 개최되는 단독발표가 더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택 위원 :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함. 단, 개인초대전이 연구업적, 학교의 대외 활동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우선 고려할 부분임.
- 이성만 위원 : 공인된 공연장에 대해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함.
- 한은택 위원 : 학장이 소속학과 위주로 알 수밖에 없으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성만 위원 :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공연장 LIST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산단과 교수간 마찰이 있을 수 있음
- 위원장 : 국외 전시·공연장은 너무 광범위하여 산단에서 해당 기관을 분류하기는 어려움. 기본적으로 국공립 전시관을 기본으로 하고, 단과대학에 요청하여 LIST를 마련해두고 단과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겠음.
- 위원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호 의안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전체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제2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호 의안> 공모과제 유치신청 지원 지침 개정(안)

- 기획협약팀장 : 공모과제 유치신청 지원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자료를 설명함.
- 위원장 : 공모과제 유치신청 지원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창연 위원 : 큰 과제의 경우 학내경쟁을 거쳐서 외부로 신청을 함. CK사업이나 이런 경우 준비기간이 길고 어려워 이런 경우는 교내 공모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궁금함
- 기획협약팀장 : CK사업은 대학 차원의 기획처 주관 사업임. BK사업 등은 학내 경쟁없이 지원기관으로 신청하게 되며, 현재 학내경쟁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지원을 받는 연구소지원사업이 유일함.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모과제 유치신청 지원 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전체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제3호 의안 공모과제 유치신청 지원 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4호 의안> 산학협력단 직원 보수제도 개선 계획(안)

- 총무인사팀장 : 산학협력단 직원 보수제도 개선 계획(안)을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함.

- 위원장 :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도움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산학협력단 직원 보수제도 개선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창연 위원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사례가 타대학도 있는가?
- 총무인사팀장 : 전남대가 올해부터 시작했음
- 유창연 위원 : 급여를 깎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다 급여를 더 주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정진근 위원 : 산단의 보수제도와 취업규칙은 조직의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게 부담임
- 위원장 : 이 계획은 고인영 단장님이 최초 취임시부터 준비해왔던 사항이며, 신임 단장님과의 상의를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고 추진함에 동의를 하였음
- 한은택 위원 : 산단직원들이 일이 많은데 보수가 적으면 대민업무가 어려움. 직원들이 고생하는 데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며, 근무성적평가 감점 사항으로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회당 1점으로 되어 있음. 교수가 산단 업무를 처음 겪을 때는 컴플레인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직원에 감점요인이 되고 그게 성과평가 C등급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면 합리적인 민원 제기인지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임
- 이성만 위원 :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인건비 상승률 완화가 기대효과로 1순위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대로 줄 수 있는 만큼 줘야 하는 것이며, 공무원 보수기준에 따라 준 것이니 많다 적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님. 연봉제 시행이 예산절감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 위원장 : 연봉제를 검토하게 된 여러 배경 중에 하나는 봉급조정수당이라는 수당 지급에 있음. 대학구성원이 기성회수당을 받던 것이 작년에 폐지되고 교 연비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산단은 봉급조정수당을 2012년부터 기성회 수당의 30%,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을 해오던 상황이었음. 이것 으로 대학 구성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언급이 있었음. 노무사와 확인 결과 산단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수당을 삭감하려면 모든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연봉제로 전환하게 됨.
- 산학연구기획부장 : 부연설명을 드리면 산단의 보수기준의 비교집단인 공무원이나 대학회계직원과 비교하면 봉급조정수당으로 인해 공무원보다 보수가 약간 높은 편이며, 연봉제 전환은 직원들이 스스로 제 안을 했고,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추진한 사항임. 근무성적평 가 시 민원에 대한 것이 잘못 평가한 것이 직원에 영향이 있다 면 최고·최저점을 제외할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조석수 위원 : 109p의 “별표 3 연봉조정 세부내역”에서 5등급을 나누었을 때 삼척 분단의 경우는 인원수가 적어서 등급에 인원이 안나오는 상황임
- 위원장 : 분단의 경우 인사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성과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유창연 위원 : 92페이지의 “별표 2 경력반영기준”에서 동일분야 경력 중 “대학, 연 구소, 사업단 등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 실무담당 경력”으로 기재된 부분을 우수한 인재 영입을 고려했을 때 꼭 회계업무로 국한시키지 말고 “대학, 연구소, 사업단 등 대학 산학협력 실무담당 경력”으로 완 화했으면 함. 산학협력단 업무가 회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위원장 : 경력반영기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직원을 뽑고 나서 경력을 산정하게 되고, 사업단, 센터 등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면 산단

내에서 10년을 근무한 경력자 보다 급여가 높은 일이 생김. 이로 인해 경력반영기준을 채용 시에 두고 입사 후에 산정하지 않고 채용당시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임

- 한은택 위원 : 전체 간접비 중 직원 연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함
- 총무인사팀장 : 간접비는 계속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인건비 비율이 얼마가 이내가 될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워 호봉제와 연봉제 간 동일 조건으로 상승률을 비교한 비교표를 첨부하였음.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별표 2 경력반영기준” 중 “대학, 연구소, 사업단 등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 실무담당 경력”을 “대학, 연구소, 사업단 등 대학 산학협력 실무담당 경력”으로 수정하고, 제4호 의안 산학협력단 직원 보수제도 개선 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전체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제4호 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5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개정(안)

- 총무인사팀장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개정(안)을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함.
- 위원장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택 위원 : 규정은 내용에 있어서 의견은 없으나, 호봉제와 연봉제 간 비교표를 봤을 때 전체 예산액이 늘고 연간 3% 상승률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반영해야 하지 않은지?
- 총무인사팀장 : 호봉제와 연봉제의 보수상승율은 기준을 동일하게 잡고 비교를 해 봐야 하므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3.4%인 것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3%로 적용을 해서 산출한 것임.
- 산학연구기획부장 : 109p의 “별표 3 연봉조정 세부내역”에서 기준액에서 직전연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였고, 인사위원회 상승률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연봉상승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보수 상승율에 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됨
- 위원장 : 취업규칙 개정과 연봉설계 부분은 노무사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전체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제5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6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봉규정 제정(안)

- 총무인사팀장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봉규정 제정(안)을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함.
- 위원장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봉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만 위원 : 교수들도 연봉제를 시행하는데 명절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연봉

에 포함되어 지급됨. 왜 따로 지급하는지 궁금함

- 위원장 : 노무사와 확인한 결과 기본연봉에 명절수당을 포함했을 때는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높아지게 됨
- 정진근 위원 : “별표4 직급별 연봉 하한액 및 상한액”과 “별표5 직급별 연봉기준액”이 기본연봉이 맞는지? 제12조 규정의 문맥을 봤을 때 기본연봉인지 기본연봉 외 수당을 포함한 연봉인지가 확실하지 않음
- 총무인사팀장 : 기본연봉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시 확인하겠음
- 한은택 위원 : 직원 직무능력평가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지? 산단 특성상 재원의 원천이 교수들에게 있으니 직원들에 대한 업무만족도 등에 따라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은가?
- 위원장 : 현재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연 2회 각 부장들이 평가를 하고, 성과평가를 다면평가를 포함하여 1회 진행하고 있음. 성과능력평가에서 다면평가랑 팀장평가, 대민평가 등을 반영함으로써 친절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한은택 위원 : 업무를 진행해보면 능력이 탁월한 직원과 아닌 직원이 있음. 그런 부분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장 :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세부 평가지침은 추후 다음 단장님과 내부구성원들이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정할 것임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별표4 직급별 연봉 하한액 및 상한액”과 “별표5 직급별 연봉기준액”의 “별표4 직급별 기본연봉 하한액 및 상한액”과 “별표5 직급별 기본연봉 기준액”으로 변경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봉

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전체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제6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봉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폐회선언(위원장)

- 2016년 제2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폐회 선언 (11:30)